

검 토 보 고 서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청원

검 토 보 고 서

접수
번호 2019-1

2019. 8. 27.(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청원개요

가. 청 원 인 : 서정의(충북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342번길 51-16) 외 283명

나. 회부 일자 : 2019. 7. 19.

다. 소개 의원 : 이상욱 의원(정책복지위원회)

2. 청원요지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과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소음 측정 조사 실시를 청원함

3. 청원이유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복되는 항공기 소음 피해로 고통이 크고 정부에서 소음피해 손해보상은 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의 개장과 시설의 관리 및 주민 복지 등에 관한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부재함

4.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서정의 외 지역주민 283명은 1978년도 청주비행장 개장 이래로 청주 국제공항 인근 외하동, 내수2리, 내수3리, 입상1리, 원통1리, 원통2리, 외남동, 오동동 지역이 청주공항 소음피해로 부동산가치 하락, 교육비 상승, 영농 활동 제약, 주거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지역 소음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청원하여 소개함

5. 검토의견

가. 본 청원은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근거 조례 제정과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 피해 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소음측정 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임

나.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면

-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소음측정망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68~84웨클로 6개 지점 중 3개 지점(외남동 80, 입상1구 84, 신대2구 80)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 지역에 해당하는 항공기소음 한도인 75웨클 이상임(붙임1, 2)
-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적용되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청주국제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국방부)을 피고로 하는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증빙을 위한 소음측정 비용이 발생함
- 이에 대해 충청북도에 청원심사 관련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2019.8.16.) 국회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군 소음법안의 통합 법률(안)인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 실태 파악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해지므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고 피해주민의 숙원 사항이 일거에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붙임3)

다. 소음피해지역의 정기적인 소음 측정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면

-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개 지점(청원구 외남동, 오창읍 신평리, 내수읍 입상리·은곡리, 북이면 신대리·내추리)에 항공기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공항 소음한도(공항인근지역 90웨클, 그 밖의 지역 75웨클)를 정하여 소음 한도 초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시 방음시설 설치 또는 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설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작전기지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한도 및 소음방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라. 종합적으로 볼 때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의 소음을 겪고 있음에도 청주국제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에 해당되어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피해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 됨
- 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항은 소음 피해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청주국제공항은 제외되어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주국제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할 조례 제정은 마땅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 바.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9.7.15.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19.8.2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고(붙임4), 본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시행령에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 실태 파악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욱 구체화되는 바 도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충청북도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망 및 소음도 현황

공항	측정소	지 점 주 소	소 음 도		
			'18.2/A	'18.1/A	'17.2/A
(6) 청주공항	외남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남로15번길 36-9(외남동 133-7)	80	80	89
	신평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가곡로 359 (신평리2구 23)	72	72	73
	입상1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471)	84	84	82
	덕일APT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북방길 52-10 (은곡리 302)	70	72	73
	신대2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2길 18(신대리 202)	80	78	79
	한국JCC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월내추길 326(내추리 253)	68	66	62

※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의 범위는 68~84웨클로서 6개 지점 중 3개 지점(외남동 80, 입상1구 84, 신대2구 80)이 항공기소음 한도인 75웨클 이상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 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활개하는 도민, 믿음경제 충북



충청북도



수신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건설환경소방위원회)

(경유)

제국 청원 심사 관련 의견 제출

1.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회-1479(2019. 8. 12.)와 관련됩니다.
2.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 도조례 제정 청원서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가.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던 13건의 군 소음법안의 통합 법률(안)인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 소위를 '19. 7. 15.부로 통과했습니다.]
 - 나. 또한, 동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 지자체장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 아울러 동 법률안은, 기존에 검토했던 도 조례(안) 보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조항을 담았다고 사료됩니다.
 - 라. 따라서, 동법률이 제정되면, 도조례도 불필요하고 피해주민의 숙원 사항이 일거에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바, 국회 입법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붙임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1부, 끝.

기 후 대 기 과 장



건설환경팀장 장황용 기후변화팀장 차은녀 대일 2019. 8. 16.

협조자 주무관 박수정

시청 기후대기과-13302 (2019. 8. 16.) 접수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회 (2019. 8. 16.) -1504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 <http://www.chungbuk.go.kr>

전화번호 220-4391 팩스번호 043-220-4319 / 13301635@korea.kr / 대국민 공개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조항(발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 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방법과 절차, 제2항·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